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6일 박재국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도민 감사관의 기능을 변경 및 추가하고, 도민 감사관 수를 확대하는 등 도민 감사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한편 조례의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의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 간결 :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 나. 도민감사관의 목적 및 기능변경
- 다. 도민 감사관 위촉인원 확대 및 자격요건 변경
- 라. 도민 감사관 감사 참여내용 변경
-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

#### 4. 검토의견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민에게 폭넓은 도정에 참여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하는 되도록 도민 감사관제를 개선하는 것과 불부합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도민감사관의 구성을 시군 지역의 감사관련 전문가들로 확대하고 각종 감사실시에 도민감사관의 참여를 명문화 시키어 도정 참여의 여건을 제공하는 것임.

도민의 도정참여 여건을 마련하여 도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각종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도민감사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불부합한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에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자료

1. 제2조 기능중 2호인 집단민원발생 사항을 삭제한 이유는?
2. 제3조 구성의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라고 하였는데 시군과 협의된 사항인지?
3. 도민감사관은 도의 각종감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5조 감사 참여를 보면 감사에 참여시킬수 있으며 의견을 반영할수 있다라고 한 것에 설명요망